



#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

2020년에도 국민 중심의 **적극행정!**  
**관세청**이 만들어 갑니다

# 01



## 중소·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(‘20.7.1 시행)

이전

세관검사장 검사비용\*  
화주 부담

\* 물품의 채취·운반에 필요한 비용

이후

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 
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 
**국가가 지원!!!**



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 
위해 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 
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

▶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
예산의 범위 내에서 **국가가 지원!!!**

※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# 02



## 중소·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·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의 관세 경감('20.4.1 시행)

이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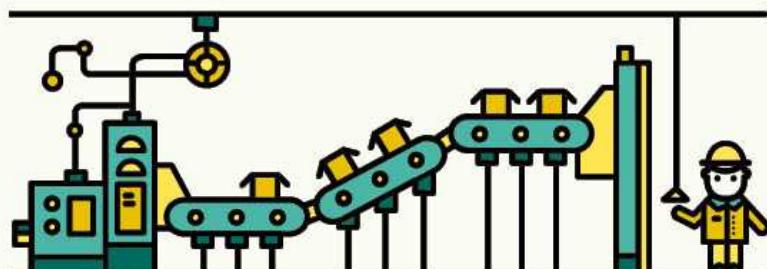
중소·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 
제조·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·장비 관세경감 미적용



이후

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

**관세 100% 경감**



중소·중견기업의  
투자비용 절감!  
가공무역 활성화!

# 03



##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 연장('20.4.1 시행)

이전

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 
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가능



이후

세관장이 수입자\*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 
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
**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**  
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

\* 수입신고시 또는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 
신청한 자는 제외



▶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 대폭 완화!!

# 04



##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(‘20.7.1 시행)

### ✓ 납세자보호관은?

-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총괄

### ✓ 납세자보호위원회는?

-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

### ✓ 납세자보호 심의 절차는?

- ①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
(1차 세관, 2차 관세청)
- ②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
- ③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



# 05



##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('20.7.1 시행)

이전

출국 전 면세점 구입물품  
여행 기간 휴대 후 국내 반입

이후

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 
**입국하면서 수령 가능**

여행객의 편의 증대!  
해외 소비의  
국내 소비로의 전환!



# 06



##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자가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경우,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처벌('20.4.1 시행)'

이전

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 
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  
→ 구매자

이후

구매대행자에게  
**연대 납세의무 부과 및  
관세포탈죄 적용**



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인한  
**소비자의 피해를 방지**하여  
**소비자 권리 보호**에 기여!

# 07



##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대상 추가(‘19.12.31 시행)

이전

컨테이너에  
적입하여 수출하는  
중고차(HS 87류)

이후

중고차 외 컨테이너에  
적입하여 수출하는  
**플라스틱 폐기물(HS 3915호)**  
**생활폐기물(HS 3825호)** 추가



폐 플라스틱, 폐기물 등의 **불법 수출 엄단**으로  
**국민 건강과 사회안전 보호,**  
**국제 무역질서 준수**를 한 번에!!